

의안 번호	제3297호
----------	--------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9월 15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9월 15일

2. 제안이유

- 가.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우선 선포(‘23.7.18.)됨에 따라,
 -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,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주민세,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함.
- 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르면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를 “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,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”로 규정하고 있음.

다. 또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1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·금융상·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, 같은 항 제6호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라. 따라서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,
-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,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분 주민세,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 :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
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

나. 감면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제4항
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 제5항

2) 필요성 : 호우 피해로 사망한 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 단체가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으로 마련함으로써, 해당 천재 지변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함.

다. 세목별 감면내용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자동차세(소유분), 주민세(개인분), 주민세(사업소분)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 및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면제하고자 함.

라. 기타

- 본 감면동의안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함.
- 본 감면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함.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023년분 주민세,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김포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, 관내 감면 대상 및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